
2024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
운영학교 선정 및 지원 계획(안)

2023. 11.

문화체육관광부·교육부

목 차

[참고] 2023 vs 2024 사업 주요 변경사항

I . 202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	1
II . 사업추진 일정	3
III . 세부 지원계획	4
IV . 학교 접수 및 선정 방법	8
V . 운영학교 운영 지침	11

<참고> 2023 vs 2024 사업 주요 변경사항

(2023. 11월 기준)

구분	2023년	2024년
지역운영기관	○ 전국 17개 시·도별 공모 선정 운영기관 - 다년(2년) 운영 적용(2023-2024)	○ 좌동
온라인시스템	○ 온라인시스템 운영 - 학교 및 예술강사 접수, 학교-예술강사 배치, 교육활동 관리 및 강사 평가, 근태 관리 등 지원 업무 운영	○ 좌동
학교선정	○ 초, 중, 고, 특수, 각종학교 지원 ○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○ 각 지역운영기관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추어 선정 → 17개 시·도교육청 검토 → 지역운영기관 최종 선정	○ 좌동
지원 교육과정	○ 교과, 창의적 체험활동	○ 좌동
지원시수	○ 학교당 연 68시수 이상 450시수 이하 ※ 분야-교육과정별 건당 34시수 이상	○ 좌동
강사처우	○ 강사비: 43,000원(1시수 기준) ○ 최대시수: 476시수 ○ 강사 급식비 지급	○ 좌동
강사 자격요건	○ A/B유형 분리하여 자격기준 운영 ※ A유형(교과, 창의적 체험활동) ※ B유형(창의적 체험활동)	○ 좌동
강사선발	○ 강사선발 및 계약 주체: 진흥원 ○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	○ 좌동
	○ 신규강사 모집 및 선발 심사 추진 ※ 전년도 활동강사의 경우, 접수절차만 시행하며 심사 절차 생략(3년 활동 가능(2021~2023))	○ 전년도 활동강사 및 신규강사 선발 추진 ※ 선발시 3년 활동 가능(2024~2026)
강사배치	○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배치 ○ 운영기관별 학교 및 강사의 지역, 분야, 교육과정, 생활권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배치 기준 수립 및 적임자 배치	○ 좌동
	○ 전년도 배치 강사에 대하여 상호희망재배치 신청 가능	○ 학교가 전년도에 배치된 강사의 재배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강사는 당해연도 배치 제외
	○ 지역-분야별 예술강사 기준시수 이상 선정 학교는 2명 이상의 강사 배치 가능 ○ 정규배치 1~3회차 진행	○ 좌동
강사평가	○ 예술강사 평가 추진 - 온라인 학생 만족도 조사	○ 평가 체계 개선(안) 도입(예정)
강사연수	○ 신규강사 대상 교과목별 의무연수 추진 ○ 법정 의무교육(5대 폭력 예방교육) 추진	○ 좌동
교육활동 관리	○ 온라인시스템 상 강사의 출강결과 등록 및 운영학교의 출강승인 ○ 학교-예술강사 사전방문협의 지원 ○ 학교-예술강사 중간협의 지원	○ 좌동
교육 기자재 지원	○ 신규 분야 최초 선정 또는 과거 지원 내용 연수(8년) 경과 학교 중 강사 배치 완료 학교 대상 기자재 지원 희망 신청서 접수	○ 좌동

I 202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분야별 전문 예술인을 초·중·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확대 및 활성화 지원
-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

□ 추진근거

- 문화예술교육 지원법('05. 12. 29. 제정 / '22. 1. 18. 일부개정, 법률 제18768호)
- '문화예술·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과부-문화부 공동협력 사업 추진 계획' 수립 및 양 부처 MOU 체결('08)

□ 추진방향

- 학교별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 극대화
-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 제공으로 학생들의 문화 소양과 사고력을 키워,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
-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 기반 조성
- 문화자원·교육여건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교육 수혜 확대
- 교과 배치 시 교육과정 내용 및 성취기준을 고려함으로써 학교 예술교육 내실화에 기여

□ 202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

- 지원기간: 2024년 1월~12월(출강시작: 3월~)
- 지원대상: 전국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(교육부 인가)

- 지원범위 ※ 교급·분야별 지원 교육과정 상이 / 세부사항 p.7 참고
 - 교육과정: 교과, 창의적 체험활동
 - 분 야: 국악, 연극, 영화, 무용, 만화·애니메이션, 공예, 사진, 디자인(8개)
- 지원내용: 예술강사 배치, 강사비 지급,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교육활동 관리, 교육기자재(지원 기준 충족 학교) 등
- 지원시수
 - 학교당 연 68시수 이상 450시수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별 예산 규모 및 학교의 수요 등에 따라 최종 결정
 - 신청 시 ‘분야-교육과정’ 건별 34시수 이상 신청 필수
 - 학교 규모, 교급,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수만 신청
 ※운영 가능 시수 대비 과도한 규모로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
- 협력기관: 17개 시·도교육청 및 지자체
- 사업시행
 - 총괄·운영: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(이하 진흥원)
 - 지역별 사업 지원·협력: 17개 시·도별 공모 선정 지역운영기관

II 사업추진 일정

□ 추진일정(안)

일 정	주 체	내 용	비 고
12월 1주~ '24 1월 3주	시·도교육청 → 관할지역학교	○ 학교 단위 대상 사업 안내	
	진흥원	○ 운영학교 접수 - 12. 4.(월) 14:00 ~ 12. 15.(금) 18:00 -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(https://aschool.arte.or.kr/)	※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※ [접수완료] 상태 확인 필수
	지역운영기관	○ 운영학교 선정 - 지역운영기관 선정→시·도교육청 검토→지역 운영기관 최종 선정 ○ 운영학교 선정 결과 발표(1월 3주 예정)	(시·도교육청) 운영학교 선정 결과 확인 안내 공문 발송
'24 1월 4주~5주	학교	○ 운영학교 변경신청 접수	
'24. 2월~	지역운영기관	○ 학교-예술강사 정규배치 1~3회차 진행 및 결과 안내 ○ 담당교사 및 예술강사 대상 설명회 개최 ※ 설명회 참여 필수 / 기관별 일정 상이	온라인시스템 및 지역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공지
	학교, 예술강사	○ 배치 완료 학교-예술강사 사전방문협의	
	진흥원	○ 배치 완료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(상시)	
'24. 3월~12월	진흥원	○ 예술강사 급여산출 및 사회보험 관리 ○ 예술강사 법정 의무교육, 교과목별 의무 연수 시행 ○ 예술강사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○ 교육기자재 지원 대상학교 기자재 지원 ○ 지역운영기관 실무교육 및 노무 지원 ○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수요 조사 ○ 온라인시스템 운영 관리	온라인시스템 공지 등
	학교, 예술강사	○ 예술강사 학교별 교육활동 실시 ○ 학교-예술강사 중간협의	
	지역운영기관	○ 정규 배치 종료 후 미배치 학교 대상 추가배치(상시) ○ 예술강사 강사비 지급 등 교육활동 지원	

※ 지역별 규모에 따라 추진일정 일부 상이할 수 있음

※ 관련 일정 변경 시 추후 공지 예정

III 세부 지원계획

1. 학교예술강사 배치 지원

□ 지원대상

○ 전국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(교육부 인가)

- 교육부 미인가 학교 지원 불가
- 학교에서 전공 분야를 신청한 경우 지원 불가(특성화 학교, 각종학교 등)

[지원불가 예시]

- 연기·영상과에 연극, 영화 분야 예술강사가 출강하는 경우
- 만화·애니메이션과에 만화·애니메이션 분야 예술강사가 출강하는 경우

□ 지원범위

○ 교육과정 : 교과, 창의적 체험활동

○ 분 야 : 국악, 연극, 영화, 무용, 만화애니메이션, 공예, 사진, 디자인(8개)

[교급·분야별 지원내용]

분 야	초등학교		중학교		고등학교	
	교과	창의적체험활동	교과	창의적체험활동	교과	창의적체험활동
국 악	○(음악·즐거운생활)	○	○(음악)	○	○	○
연 극	○(국어)	○	○(국어)	○	○	○
영 화	×	○	×	○	○	○
무 용	○(체육·즐거운생활)	○	○(체육)	○	○	○
만화·애니메이션	×	○	×	○	○	○
공 예	×	○	×	○	○	○
사 진	×	○	×	○	○	○
디 자 인	×	○	×	○	○	○

※ 분야별 교육과정 복수신청 가능

※ 평일 외(주말, 공휴일) 수업 운영 불가. 단, 5월 1일(근로자의 날) 제외

※ 상기 교육과정 및 분야 외 임의 운영 불가(자유학년·학기제, 방과후학교, 기타 행사 지원 등)

교육과정 신청 시 참고사항

- 초등학교 및 중학교 '교과' 는 다음 교과 과목만 연계 가능
 - 초등학교 : 국악-음악·즐거운생활, 연극-국어, 무용-체육·즐거운생활
 - 중학교 : 국악-음악, 연극-국어, 무용-체육
- ※ 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과 과목과 연계 가능
- 창의적 체험활동 내 동아리 지원의 경우, 타 예산 및 지원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필요하며, 자율동아리 유형에는 지원 불가

□ 지원내용

- 8개 분야별 예술강사 선발 및 배치
- 예술강사 강사비 및 기타수당 등
- 예술강사 출강시수 등 교육활동 관리를 위한 온라인시스템
- 지역별 수요, 특성, 환경 등을 고려한 운영학교 활동 관리

□ 지원시수

- 학교당 연 68시수 이상 450시수 이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수요 및 지역별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최종 결정
 - 단, ‘분야-교육과정’ 건별 34시수 이상 신청
 - 학교 규모, 교급,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수만 신청
 - ※ 운영 가능 시수 대비 과도한 규모로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
 - 학교별 지원 시수는 최종 학교선정 결과 발표 시 확정(‘24. 1. 3주 예정)
 - 지역-분야별 예술강사 ‘기준시수’ 이상으로 시수가 선정된 학교는 2명 이상의 강사가 배치될 수 있음
- (예) A지역의 B학교가 ‘국악’으로 200시수 선정되었을 시, A지역 국악 강사의 기준시수가 100시수라면 강사 2인 100시수씩 배치

[참고] ‘기준시수’ 란?

예술강사 1인의 지역/분야별 배치 가능한 시수 구간으로, 당해 연도에 지역별로 선정된 운영학교 수와 선발된 예술강사 수를 고려하여 설정

※ 기준시수는 정규배치 2~3회차에만 적용되며, 정규배치 1회차(상호희망재배치) 및 추가배치 시에는 기준시수 미적용

※ 도서벽지 학교는 기준시수 미적용

(예) A지역의 B학교가 ‘국악’으로 200시수 선정되었을 시, A지역 국악 강사의 기준시수가 100시수라면 강사 2인이 100시수씩 배치되어야하나 도서벽지 학교는 1인이 200시수 수업 가능

2. 교육기자재 지원

□ 지원목적

- 학교 현장에서의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수업 운영 및 지속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

□ 지원대상

○ 교육기자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학교

- 지원 대상 : 금년 신규 분야로 최초 선정된 학교 또는 과거 지원된 교육기자재 내용연수가 8년 경과된 학교

※ '24. 2월 중순 기준 예술강사 배치완료 학교(예정)

- 지원 교육과정 : 창의적 체험활동
- 지원 분야 : 연극, 영화, 무용, 만화·애니메이션, 공예, 사진, 디자인 (총 7개)
 - ※ '2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교육기자재 지원기준은 예산 및 운영학교 배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
 - ※ 운영학교 배치 이후, 교육기자재 지원 학교 대상 세부 안내 예정

□ 지원방법

○ 교육기자재 지원 대상 학교 중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대상 일괄 지원

- (진홍원→학교) 지원 대상 학교로 지원 희망 신청 공문 안내
- (학교→진홍원) 온라인 시스템 기자재 메뉴에서 <지원희망신청서> 제출
 - ※ 교육기자재 지원 안내 공문을 미수신한 학교의 경우, 대상 학교가 아니므로 <지원희망신청서> 제출 불필요
- 공문 접수 내용에 따라 지원 희망 학교 대상 교육기자재 일괄 지원

○ '24년 사업 운영 종료 후, 해당 기자재는 지원학교로 자동 귀속

※ 지원학교의 운영포기(강사포기 포함) 또는 선정내역(분야, 교육과정) 변경 시 지원기자재 반납 필요

○ 사진 분야(사진기 세트) 및 만화·애니메이션 분야(태블릿 PC 세트)에 한하여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을 통해 예술강사에게 대여, 사업 종료 후 반납

□ 지원품목

○ 예술강사 지원사업 분야별 교육기자재

- 교육현장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품목 지원을 위해 예술강사 및 학교 담당교사 대상 교육기자재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후 '24년 지원품목 선정에 참고

<참고> '23년도 교육기자재 지원품목

분야	교육과정	2023 지원품목	비고
연극	창의적 체험활동	이동형 충전식 앰프	선택 지원
		가면 세트	택 1
		천(보자기)	
영화	창의적 체험활동	촬영세트(캠코더, 케이스, 추가배터리, 슬레이트, 삼각대)	선택 지원
		스마트폰 무선 MHL동글	택 1
		샷건 마이크	
무용	창의적 체험활동	소고	택 1
		탈춤한삼	
		고급부채	
		천(보자기)	택 1
		이동형 충전식 앰프	
		블루투스 스피커	
		2채널 스피커	
핀 마이크	선택 지원		
만화·애니메이션	창의적 체험활동	스마트폰 무선 MHL동글	택 1
		수직 촬영 거치대	택 1
		조트로프(추가 용지 포함)	
		만화큐브(추가 용지 포함)	선택 지원
		채색도구세트(프라즈마 색연필, 패브릭펜, 마카펜)	
		도화지	신청 지원 (강사 대여)
공예	창의적 체험활동	순지	기본 지원
		색한지(12색)	택 1
		슈링클스 세트	
		부직포 펠트세트	
		채색도구세트(프라즈마 색연필, 패브릭펜, 마카펜)	
		색 조각 타일	
사진	창의적 체험활동	사진기 세트 (디지털카메라, 보관가방, 메모리카드, 충전기 및 배터리 등)	신청 지원 (강사 대여)
		종이액자	택 1
		바늘구멍 사진기	
		포토프린터기	선택 지원
디자인	창의적 체험활동	버튼(배지)제작기계	선택 지원
		채색도구세트(프라즈마 색연필, 패브릭펜, 마카펜)	신청 지원 (강사 대여)
		태블릿PC 세트 (태블릿PC, 추가메모리, 파우치, 커버케이스 등)	

※ '24 학교예술클ubs 지원사업 교육기자재 지원품목 및 수량은 지원예산, 지원학교 수, 품목 수요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IV 학교 접수 및 선정 방법

□ 운영학교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3. 12. 4.(월) 14:00 ~ 12. 15.(금) 18:00

※ 접수기간 이후 접수 불가

※ 기간 내 반드시 [접수내역 제출하기] 클릭 후, 접수완료 여부 최종확인 필수(임시저장 학교, 접수 미완료 학교 등 별도 추가 접수 없음)

※ 접수 미완료 시 202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불가

○ 접수방법 :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(aschool.arte.or.kr)을 통한 접수

[온라인시스템 권한 신청 및 접수 절차]

※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기존 가입자의 경우, ②부터 진행

※ '23년도 운영학교 담당교사의 경우, ④부터 진행

※ 담당교사가 변경된 학교는 기존 담당교사 권한 삭제(운영기관에 요청) 후, ①부터 진행

-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 홈페이지(www.arte.or.kr) 회원가입
 - 온라인시스템 로그인을 위해 필요한 단계로, 홈페이지 미가입자에 한함
- ② '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(aschool.arte.or.kr)' 접속 및 권한신청
 - 대표 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온라인시스템 로그인
 - [담당교사]로 권한신청
- ③ 권한승인 처리(지역운영기관)
 - 담당교사 재직 확인 후, 지역운영기관에서 권한승인
 - ※ 권한승인에는 약 2~3일이 소요되며, 승인완료 후 학교접수 가능
- ④ 온라인시스템(aschool.arte.or.kr)을 통한 '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' 접수
 - 학교 기본정보, 신청 분야 및 교육과정, 수업시수, 운영계획 등 작성
 - ※ 접수내용 작성 관련, <온라인 접수 매뉴얼> 참고
 - [접수내역 제출하기] 클릭 후, 접수완료 여부 최종확인 필수
 - ※ 접수기간 내 [접수내역 제출하기]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
 - ※ [접수관리] > [학교접수/선정현황조회] 메뉴에서 접수완료 여부 확인 가능 (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, 해당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음)

※ 자세한 접수방법은 <온라인 접수 매뉴얼> 참고

※ 문의처

-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운영기관 ※<학교 신청 및 교육 운영 가이드> p.18 참고

-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(T.1600-0144, 내선번호 1번)

○ 접수 관련 유의사항

- 특수학교 무용 분야의 경우,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개 학교에 2명의 예술강사가 동시에 파견되므로, 수업을 희망하는 시수의 2배수 신청 필요
 - ※ (예시) 특수학교 무용 분야 100시수 수업 운영 희망 시, 200시수 신청 필요
-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, 학교 접수 시 지원받고자 하는 교급 (초·중·고) 기재 필요
- 기간 내 접수완료 후, [학교접수/선정현황조회] 탭에서 최종 접수내역 및 접수완료 여부 확인 필수
 - ※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음
- '24년 3월에 개교 예정인 학교도 신청 가능하며, 세부사항은 <온라인 접수 매뉴얼> 참고
 - ※ 학교명 미확정 인 경우 '(가칭) 0000학교' 로 등록, 개교 후 학교명 수정 필수
 - ※ 주소 미확정인 경우 도로명 주소로 조회 가능한 '개교 예정지(혹은 근거리 주소지)' 우선 입력 후 정규배치 전 주소 수정 필수('24년 1월 3주 이내)
- '24년 3월 개교 예정이나, 개교 관련 사항이 미확정되어 접수 불가능한 학교의 경우 추가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

[참고] 개교 예정 학교 추가 접수

- 대상 : 2024년 3월 개교 예정 학교
- 내용 : 접수 기간(2023년 12월) 내 개교 관련 사항 미확정되어 접수 불가능한 개교 예정 학교 대상 추가 접수 진행
- 방법 : 2024년 2월 중 별도 안내(교육청 협조)
- 기타 유의사항 : 2024년 3월 개교 예정 학교 외 접수 불가

○ 상호희망재배치 가능

- '23년도 운영학교의 경우, 접수하는 '분야-교육과정' 별로 재배치를 희망하는 예술강사 1인 선택 가능
 - ※ 2023년 11월 5일(월)까지 해당 학교에 배치된 예술강사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음
 - ※ 특수학교 무용 분야의 경우, 2인 강사 모두 재배치 신청 가능
- 학교 소재지역과 강사 선발지역이 일치하고, 재배치를 상호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배치됨

○ 배치 비희망 강사 선택

- 학교가 전년도에 배치된 강사의 재배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, 학교 접수 시 해당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
- 배치 비희망 강사는 시스템 상 ‘24년도 배치 대상에서 자동 제외됨

□ 운영학교 선정방법

○ 학교선정 기준 ※하단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

- 전체 학교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
- 문화소외지역 학교 선정
(소규모 학교,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 도서벽지학교 등)
-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취약학교 선정
(원도심 학교, 소외계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 등)
- 기타 지역교육청별 기준 고려 가능
(전년도 지원 여부, 문화예술교육 추진실적 및 교육여건 등 고려 선정 등)

○ 선정절차



○ 선정결과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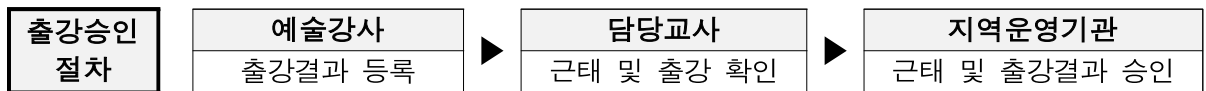
- 학교 선정 결과 발표 : ‘24년 1월 3주(예정)

V 운영학교 운영 지침

□ 운영학교 운영 필수사항

○ 예술강사 출강 관련 온라인 승인

- 온라인시스템(ashool.arte.or.kr)을 통해 예술강사가 등록된 수업 계획 및 일정 확인 후, 수업이 이루어진 시수에 대한 담당교사의 온라인 출강승인이 필요함
- 담당교사의 출강승인은 예술강사 강사비 지급 근거이므로 **매월 초 전월 강사비 산정 이전에 반드시 출강승인이 완료되어야** 하며, 출강승인 지연으로 강사비가 이월되어 임금체불 등 위법 사항 발생 시,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있음



- 출강승인 시 예술강사의 실제 출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실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담당교사 출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,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

○ 예술강사 근태 확인

- 원활한 예술교육활동 운영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예술강사의 지각, 결근 등 근태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입력 필요
- 담당교사 확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근태 정보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예술강사별 제공 예정

○ 예술강사 학생 만족도 조사 협조

- 예술강사의 연간 교육 활동 종료 후, 수업에 참여한 학생 전원이 학생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교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
- 담당교사는 교육활동 종료 후 온라인시스템 내 생성된 만족도 조사지 URL 또는 QR 코드를 수혜 학생에게 배포 및 조사 관련 안내 진행

-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향후 예술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제공 예정이며, 유의미한 결과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해당 예술강사의 교육 활동 완료 시점에 추진 필요

※ 2024년 학생 만족도를 포함한 예술강사 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만족도 조사 전수 필수 참여 필요

○ 사전방문협의 진행 및 확인

- 예술강사 배치 완료 후, 예술강사의 연간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강 전 학교와 사전방문협의 및 확인이 필요함

- 연간 수업일정, 교육목표 및 방향, 학습내용, 역할 등에 대한 상호 협의
- 수업환경(장소, 재료, 기자재 등) 및 학생 정보 공유 등

※ 협의결과에 따른 연간 사업운영 필수, 협의내용 변경 필요 시 강사와 재협의 필요

- 예술강사의 학교 사전방문협의 비용 지급을 위해 사전방문보고서에 대한 학교 담당자 확인 필수임

※ 사전방문협의 비용은 해당 학교 출강 강사 대상 1회 지급

○ 중간협의 진행 및 확인

- 연간 교육활동 진행 중반부에 교육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업진행 방향을 조율하기 위해 학교-예술강사 간 중간협의를 권장함(단, 상호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)

- 교수학습활동의 흐름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
- 학습자 반응을 통한 수업 조정 및 향후 진행 방향 협의 등

- 중간협의 진행 시, 학교 선정시수 중 강사별 1시수가 중간협의 시간으로 활용되며, 예술강사의 중간협의 비용은 온라인시스템 출강결과 등록 및 담당교사의 출강승인을 근거로 지급됨(강사와 연간계획 수립 시 해당사항 고려 필요)

※ 중간협의 비용은 해당 학교 출강 강사 대상 1회 지급

※ 시수 신청 시 중간협의 고려하여 신청

(예) 수업시간 99시수 필요 시, 중간협의 1회 포함하여 100시수 신청

※ 필요 시, 연간 교육활동 종료 후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한 사후협의 진행 가능. 단, 별도 비용 지급 없음

○ 문화예술교육 배정시수 운영 원칙

- 학교 배정시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,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운영기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 후 변경해야 함
 - ※ 지역운영기관 협의 없이 배정시수를 변경하여 결손 시수가 발생하거나, 배정시수를 초과하여 초과 시수가 발생한 경우, 관련 비용(강사료 등)은 학교에서 부담해야 함
- 학교에 배정된 수업시수는 사업에서 안내한 교육과정 및 분야 외 임의 운영이 불가함(자유학년·학기제, 방과후학교, 기타 업무·행사 지원 등)
- 특히 예술강사 수업운영 외, 학생 평가, 시험감독, 소풍, 수학여행, 행사지원(캠프 등) 등은 불가하며, 예술강사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강사가 배정받은 수업 시간 외에는 지원 불가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포기(변경)하는 경우, 차년도 학교 선정 시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 비선정되거나 선정시수가 삭감될 수 있음

○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협조

- 운영학교는 배치된 모든 예술강사에게 ‘성범죄 경력’ 및 ‘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’ 조회 동의서를 받아, 운영학교 출강 전 직접 조회해야 함

※ 관련법률 : 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5항,
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제5항

- 예술강사의 성범죄 경력은 ‘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’에 한해 조회 가능하며, 지역운영기관은 ‘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’이 아니므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법적으로 불가함

○ 평일 외 예술강사 출강 불가 유의

- 예술강사는 평일 외(주말, 공휴일) 출강이 불가하며, 학교 사정으로 부득이 주말 및 공휴일에 수업을 진행할 경우 관련 비용(강사료 등)은 학교에서 별도 부담해야 함
 - ※단, 근로자의 날(5월 1일)의 경우 평일 출강 가능
- 담당교사는 출강결과 승인 시 평일 등록 여부 등 출강내역 확인 필요

□ 운영학교 협조 필요사항

○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협조

- 사업 시작 전, 지역별로 추진되는 교원 대상 사업 설명회에 필수로 참석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동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운영학교 담당교사의 역할 숙지가 필요함
- 사업 운영 시 관계기관을 포함한 운영기관의 컨설팅, 만족도 조사, 학교 방문 및 수업 참관 모니터링 등에 협조 필요함

○ 학생 출석 관리

- 교사는 학생들이 예술강사와의 협력수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출결 등 수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

○ 해당 분야 수업진행을 위한 실기교실 제공 등 교육환경 조성

-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기교실 등 교육환경 조성 및 편의 제공 협조가 필요함
 - 연극·무용(실습실 또는 무용실) 등의 분야 실기교실(공간)
 - 강사의 대기실, 책상 등 교육활동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제공 필수
 - 예술강사 희망 시, 학교 기준에 따른 중(석)식비 징수 후 학교 내 식당 이용 협조

○ 해당 분야 수업 진행에 필요한 재료 및 자료 지원

- 학교에서 제공 가능한 소모품 등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을 예술강사에게 사전 공유하여 수업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
 - 소모품(모든 분야), 재료비, 교보재, 복사비 등 학교 부담 필수(수업 진행에 필요한 재료비를 강사 자비로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)
- 교과 수업의 경우 교과서, 교사용 지도서 등 예술강사와 공유하여 교육목표에 맞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필요함

○ 학교 담당교사-예술강사 협력수업 진행

- 예술강사는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전문 예술인이므로 교사는 예술강사가 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

- 예술강사는 원칙상 단독 수업이 불가하므로 교사는 교육 계획수립 단계부터 수업 진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예술강사와 상호 협업해야 함
- 교사는 수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해 예술강사와의 협력수업에 적극 임해야 함

○ 학교예술강사 유급 병가 및 경조 휴가 사용 협조

- 예술강사가 출강예정일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8일 이내에 병가를 부여하며 연간 3일까지는 유급휴가로 사용 가능함
 - 또한, 예술강사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(결혼, 입양, 사망) 경조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
 - 예술강사의 원활한 병가 사용을 위해 병가 사용일에 대한 담당교사 확인 및 온라인시스템 승인, 보강일정 조정 등에 협조 요청
- ※ 예술강사의 병가, 경조사를 사유로 진행하지 못한 시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예술강사-운영학교간 협의하여 보강을 우선함